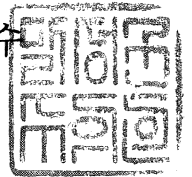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8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3 1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업무 대응 및 효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: 안 제2조

- 안 제2조(정원의 총수)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: 1,001명 → 1,003명
- 안 제2조(정원의 총수)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: 984명 → 986명

나.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: [별표 3]

- 총 정원 : 1,001명 → 1,003명
- 본청 정원 : 639명 → 641명
-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, 제30조, 제38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확보 예정

다" 기타

*+, 신구조문 대비표 ! 붙임 참조

\$, 입법예고\$#\$ \$ +." ; %" >", 결과 ! 의견 없음

*%, 규제심사 !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*., 성별영향평가 ! 해당사항 없음

*2, 부패영향평가 ! 특기할 사항 없음

*>, 부서합의 ! 해당사항 없음

*3, 비용추계서 ! 붙임 참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"

제\$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?+&##+명@을 ?+&##%명@으로 한다"

제\$조제+호 중 ?0/.명@을 ?0/>명@으로 한다"

별표 %을 별지와 같이 한다"

부 칙

이 조례는 \$\$\$\$년 .월 +일부터 시행한다"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【 별표 3 】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R S	T U	V W	X Y \ [Z	] ^ _ `	a b c f e d	g
T U	++##+&##%	>%0>.+	+3	++\$	+33	2>
h [] U	+	+				
i j	+	+				
l k] U	0>003+	>%.->%>	+3	/2	+33	2>
%m	+	+				
. m	/	2	+	+	+	
2m	.\$	\$/	\$	\$	3	%
>m n o U	0+ / 0\$#	>##>#\$	+.	/ \$	+>0	2%
p R] U	%	%				
p R `						
p R \	%	%				
r q] U	\$3			\$3		
r q `	\$			\$		
r q \	\$2			\$2		
s h] U	+	+				
2m u t						
>m u t n o U	+	+				

소요비용 추계서

1. 사업개요

중대재해예방팀 신설에 따라 정원 증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"

2. 비용 발생 요인

공무원 증원 \$명*3급 v+& / 급 v+,

3. 관련조문

(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) 제\$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" 추계의 전제

'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\$\$\$\$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
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

G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%"/w로 산정

나" 추계 결과 ! .3>&>3천원정도

'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
따른 인건비 비용은 2차년도까지 총 .3>&>3천원정도 소요될
것으로 예상됨"

다" 재원조달방안 ! .3>&>3천원정도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기획예산실 기획팀장

〈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)	2차년도 (2023)	3차년도 (2024)	4차년도 (2025)	5차년도 (2026)	계
세 입		88,358	91,716	95,201	98,819	102,573	476,667
지 방 세		88,358	91,716	95,201	98,819	102,573	476,667
의존재원							
세 출		88,358	91,716	95,201	98,819	102,573	476,667
인 건 비		88,358	91,716	95,201	98,819	102,573	476,667
재원 조달		88,358	91,716	95,201	98,819	102,573	476,667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군 비		88,358	91,716	95,201	98,819	102,573	476,667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□ 지방자치법

x+\$2조*행정기구와 공무원, A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"

< 제+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"

B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"

C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E자격E보수E복무E신분보장E징계E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"

H 지방자치단체에는 제+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"

I 제2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(국가공무원법) 제%\$조제+항부터 제%항까지에도 불구하고 2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>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"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\$0조*직급별 정원,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"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" -

제##조*정원의 규정, A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"

+" 집행기관의 정원*제\$호와 제%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,

\$" 본청E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
% "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."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2"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<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P (지방전문경력관 규정) 제\$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*이하 y지방전문경력관y이라 한다,의 정원을 포함한다Q은 제+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\$\$조제\$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" 다만 & 시E도의 2급 이하*시E군E구는 >급 이하,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

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\$\$조제\$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"

B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*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(지방전문경력관 규정) 제.조제+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,은 제+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\$\$조제\$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"

C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\$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"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"

H (지방공무원법) 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.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"

제%/조*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=규칙의 입법예고,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=규칙의 제정=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한다" 다만,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=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*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,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"

<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+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"

